

의안 번호	1471	<p>[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8. 8. 23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8. 8. 24.(금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8. 9. 14.(금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안전도시국장 장길원)

### 가. 제안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등 공익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미관지구 건축제한 사항 등을 시가지경관지구 건축제한으로 변경(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7조)
-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0조 삭제로 제7조제1항 제2호다목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이의신청 조문 삭제(안 제7조)
- 3) 상위법령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누락된 내용 반영(안 제8조의2)

### 다. 근거법규

- 1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7조, 제76조
- 2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, 제82조, 제114조제6호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유경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
-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합리적인 개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을 높이하고자 하는데 있음.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